청라 푸르지오 라피아노 1단지 입주자 모집공고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 안내 사항]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청라 푸르지오 라피아노는 사이버견본주택(www.prugio-lafiano.co.kr)을 운영합니다.

– 본 사이버견본주택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청약안내,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prugio-lafiano.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발표 후 정당계약 기간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고지한 해당 날짜 및 운영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시 당첨자 및 계약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입장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에 한해 입장 가능)
- 당첨자의 정당계약 기간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청라동 105-145, 105-146(FD5-2,3)에 공급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라국제도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이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64조 제1항 1호 및 2호 「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청약 이전에 관계법령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군"별 청약신청이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청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의 생활환경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현장미방문 및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9.08.(화)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연령 판단기준일임)

■ 본 주택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에게 공급하며[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기존의 당첨사실, 청약통장 가입여부,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중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제1항, 제59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만을 적용받으므로, 입주자저축요건, 주택청약자격,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요건, 재당첨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청약은 온라인 청약입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1인당 1군, 2군, 3군, 4군에서 각 1건 총 4건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동일 군에 2건 이상 중복청약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신청은 "군"별로 접수하고 입주자 선정 및 동 호수 배정은 온라인 추첨을 통하여 무작위로 전산 추첨합니다. 당첨 및 계약 이후 다른 동호로 변경 불가합니다.

■ 동일 "군" 중복청약 및 당첨으로 인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청약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에서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주택입니다.

■ 본 주택의 설계도서는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의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84A, 84E2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은 안내책자,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 등을 참고하시고,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주택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이버견본주택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진행을 위하여 사이버견본주택(www.prugio-lafiano.co.kr)을 운영하오니 해당 사이트에서 청약신청 및 분양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견본주택에 게시된 분양정보만을 확인하고 청약 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사정에 따라 예약제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으며, 청약일, 당첨자 발표일, 정당 계약기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날에는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방문 전 대표번호로 관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입주예정일 : 2022년 7월 예정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 주요 공급 일정 안내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 발표	정당 계약	비고
일 정	2020.09.18.(금요일) 10:00~18:00	2020.09.20.(일요일) 16:00	2020.09.22.(화요일)~2020.09.25.(금요일) 10:00~18:00	
방 법	온라인 신청	사이버견본주택 게시	견본주택 방문 계약	
장 소	청라 푸르지오 라피아노 사이버견본주택 (www.prugio-lafiano.co.kr)		청라 푸르지오 라피아노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844)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청라 푸르지오 라피아노 1단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 - 12934호(2020. 9. 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5-145, 105-146 (청라국제도시 FD5-2,3BL)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19개동, 총 227세대) 및 부대시설, 지하 1층 ~ 지상 1~3층, 연면적 26,368.16㎡ / 주차대수 291대

※ 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116,117,118동 – 연립주택 / 119동 - 다세대주택

군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당 주택면적(㎡)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기타 공용 부대시설	기계/ 전기실	계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	총공급 세대수	해당 동 · 호
1	84.9900A	84A	84.9900	30.2867	115.2767	3.0091	1.5573	4.5664	119.8431	189.3153	47	101동101~107호 102동101~105호 103동101~106호 105동101~105호 106동101~105호 110동102~106호 111동101~104호 112동101~105호 113동101~105호
2	84.9600B	84B	84.9600	32.5546	117.5146	3.0080	1.5568	4.5648	122.0794	189.2485	47	101동201,203,205,207,209,211,213호 102동201,203,205,207,209호 103동201,203,205,207,209,211호 105동202,204,206,208,210호 106동201,203,205,207,209호 110동202,204,206,208,210호 111동202,204,206,208호 112동202,204,206,208,210호 113동201,203,205,207,209호
	84.9800C	84C	84.9800	35.4260	120.4060	3.0087	1.5571	4.5658	124.9718	189.2931	47	101동202,204,206,208,210,212,214호 102동202,204,206,208,210호 103동202,204,206,208,210,212호 105동201,203,205,207,209호 106동202,204,206,208,210호 110동201,203,205,207,209호 111동201,203,205,207호 112동201,203,205,207,209호 113동202,204,206,208,210호
3	84.9900D1	84D1	84.9900	16.0567	101.0467	3.0091	1.5573	4.5664	105.6131	189.3154	12	101동108호 110동101호 114동103,106,109,112호 115동101,104,107,110호 116동103,106호
	84.9900D2	84D2	84.9900	16.0567	101.0467	3.0091	1.5573	4.5664	105.6131	189.3154	17	104동101,103,105,107호 107동101,103,105,107호 108동102,104,106호 109동101,103,105,107,109,111호
4	84.8900E1	84E1	84.8900	16.8796	101.7696	3.0055	1.5555	4.5610	106.3306	189.0926	20	114동101,102,104,105,107,108,110,111호 115동102,103,105,106,108,109호 116동101,102,104,105,107,108호
	84.8900E2	84E2	84.8900	16.8796	101.7696	3.0055	1.5555	4.5610	106.3306	189.0926	37	104동102,104,106,108호 107동102,104,106,108호 108동101,103,105,107호 109동102,104,106,108,110호 117동101~107호 118동101~107호 119동101~106호

-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산정에 착오없으시길 바람. ※[평형환산 방법] 주택형별 면적(㎡) ×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 3.3058
- 상기 기재 세대당 주택면적 및 대지지분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여 사용함에 있어 전체면적 및 지분에 차이가 발생하는 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단수오차는 준공에 따른 공부생성시 111동 101호의 면적(84A)에서 가감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별도의 정산은 없음.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일부 지상주차장 등 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 홍보물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외관 색채, 외벽 재질, 외벽 형태, 부대시설 등의 색상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별로 외벽의 색채 및 재질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각 동의 주택유형(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이 상이하오니, 해당 동의 주택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및 청약신청금 납부(일부 금액 납부 등)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약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내 계약금을 별도로 입금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III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1차 계약금)로 1차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정당계약 기간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오니, 당첨자께서는 사전 예약 후 계약 장소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일시	계약 장소
2020.09.22.(화요일)~2020.09.25.(금요일) 10:00~18:00	청라 푸르지오 라피아노 견본주택(인천 서구 청라동 1-844)

※ 계약체결 전 아래 "공급대금 납부방법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1차계약금	하나은행	289-910013-098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2차계약금/ 중도금 / 잔금	하나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 공급 호수별로 가상계좌 형태로 부여될 예정이므로, 호수별로 계좌가 달라 입금 시 주의가 필요하오니 반드시 공급계약서를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무통장입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공급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상기 청약신청금 환불 내용을 숙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01호 홍길동 → 101101홍길동)

▣ 계약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당첨자의 정당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 및 단지 내 건축물 등의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사업주체에게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주택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1항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제2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부터 제6항에 준하여 적용됩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 서류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공급대금/발코니확장대금/추가선택품목대금, 견본주택 수납 불가)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주택 계약용) 1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신청자 본인만 신청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원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부)
법인 계약 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공급대금/발코니확장대금/추가선택품목대금, 견본주택 수납 불가) •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대표이사 신분증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 구비 서류)	•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견본주택에 양식 비치)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주택 계약위임용)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인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
※ 법인 계약 시 법인 대표자 명의로 당첨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하며, 직원 등 대표자가 아닌 경우 당첨되더라도 법인 명의로 계약이 불가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하여 상기 본인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이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총 분양가격의 40% 범위 내에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주택형별로 계약금 (1차, 2차계약금)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일시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중도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공급 계약 해제 및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세대(2세대이상)계약자,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법인은 중도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2년 7월

-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예정입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 금액은 실입주지정개시일에 따라 정산하며, 입주지정기간 중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완납여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수도광열비 등이 부과됩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주택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조경 및 시설물은 계획 변경에 따라 견본주택 내 모형도 및 CG와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하나의 단지이며, 하나의 단지로 부대복리시설과 공동주택 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이며, 부대복리시설의 대지지분은 각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함.

IV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 발코니확장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확장금액	계약금 (계약 시 10%)	1회차 중도금 (2021.01.07. 20%)	2회차 중도금 (2021.11.08. 20%)	잔금 (입주 시)	비고
84A	28,391,000	2,839,100	5,678,200	5,678,200	14,195,500	
84B	28,908,000	2,890,800	5,781,600	5,781,600	14,454,000	
84C	23,859,000	2,385,900	4,771,800	4,771,800	11,929,500	
84D1	25,322,000	2,532,200	5,064,400	5,064,400	12,661,000	
84D2	25,443,000	2,544,300	5,088,600	5,088,600	12,721,500	
84E1	30,492,000	3,049,200	6,098,400	6,098,400	15,246,000	
84E2	31,482,000	3,148,200	6,296,400	6,296,400	15,741,000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발코니 확장 공사는 공동주택의 시공과 동시에 시공되어 최초입주지정기일 내에 시공이 완료되는 품목으로 일정 공정이 진행된 이후에는 발코니 미확장을 선택할 수 없사오니 이점 유의하기 바라며 선택가능 여부는 개별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등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공급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함).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질 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세대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안방 발코니 부위의 경우 단창이 설치되며, 외부측 벽체 및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에 비해 발코니 면적 및 높이가 축소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 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음.
- 자세한 확장공사 내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하나은행	343-910026-872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중도금 / 잔금	하나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 공급 호수별로 가상계좌 형태로 부여될 예정이므로, 호수별로 계좌가 달라 입금 시 주의가 필요하오니 반드시 공급계약서를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무통장입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공급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 공통사항
- 추가 선택 품목의 공급 주체는 위탁자인 ㈜알비디케이카사이며,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사업주체와 관련이 없음
- 당 현장 유상옵션의 모든 금액에는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미포함 금액이므로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당 현장 유상옵션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 품목 옵션 계약 불가하며, 각 항목별로 계약 체결이 가능한 일정을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임.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주택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 계약 체결 요함.
- 옵션 품목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옵션 선택으로 설치되는 면적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옵션은 완제품이며, 추후 추가 신청 및 취소 요청이 불가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유상옵션 품목 선택 이후 제품 특성상 시장 판매가가 감액 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이에 대한 차액이나, 감액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대한 책임 없음.

1)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에어컨 설치부위 (개수)	선택사항	금 액	계약금 (계약 시)	1회차 중도금 (2021.01.07. 20%)	2회차 중도금 (2021.11.08. 20%)	잔금 (입주 시)	제조사	비고
84A, 84B, 84C, 84D1, 84D2, 84E1, 84E2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5EA)	기본형	8,756,000	875,600	1,751,200	1,751,200	4,378,000	삼성전자	
		옵션형 (공기청정옵션 추가)	9,988,000	998,800	1,997,600	1,997,600	4,994,000		

- 시스템 에어컨 관련 옵션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공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공급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공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공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 이전에 그 주택공급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구 분	사업주체 겸 시행수탁자	시공사	시행위탁자	비 고
법 인 명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알비디케이카사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10111-2137895	131111-0507300	
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서울특별시-주택2013-048	-	경기-주택2019-0125	

■ 분양관련 문의

대표번호	견본주택 위치	사이버견본주택	비 고
1877-339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844 일원	www.prugio-lafiano.co.kr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기 청라 푸르지오 라피아노 대표번호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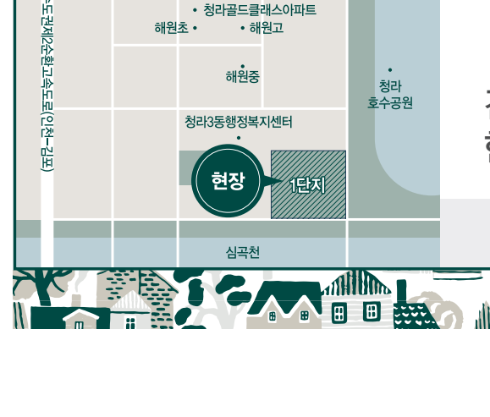

1877-3390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844
현장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5-145,105-146(청라국제도시 FD5-2, 3BL)

시행 하나자산신탁 시공 대우건설 위탁 ㈜알비디케이카사